

객관적 보도특권의 문제점과 과제

헤리 W 스톤사이퍼

필자인 헤리 W 스톤사이퍼 교수는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에 재직 중이며 이 글은 「Journalism Quarterly」 1982 년 가을호에 실린 것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편집자주

1977 년, 미연방항소법원인 제 2 순회 법정은 비록 기자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기사가 공적 인사에 관해 「저명하고 (prominent) 」, 「책임있는 (responsible) 」 사람들이나 조직들에 의해서 행해진 기사일 경우 비록 명예훼손적 기사라 할지라도 신문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보호했다.

한 논평가는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법정도 언론사에게 고의로 명예훼손적 허위를 보도하는 광범위한 특권을 용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객관적 보도특권(neutral reportage privilege)은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에서 공식화된 헌법적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칙과 공정한 보도의 관습법적 특권이 양자의 범위를 넘어선다. 관습법 아래서, 허위사실의 고의적인 반복은 공문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의사록 또는 공무원의 공무행위에 관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에 제한된다. 건전한 논쟁을 보호하는 현실적 악의의 법칙아래서, 기사는 허위에 대한 고의성 또는 진실과 허위에 대한 무분별한 경시없이 작성되어야 된다. 대조적으로 수정헌법 제 1 조에 근거한 제 2 순회 법 정의객관적 보도특권은 기자측의 고의적인 허위보도를 문제삼지 않는다. 제 2 순회법정의 「미숙한 원칙(infant doctrine)은 많은 평론가들 의해서 비판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연방대법원이 관습법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헌법적인 객관적 보도특권의 존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동시에, 객관적 보도특권을 공식화한 제 2 순회 법정의 에드워드 대 내셔널 어드델 소사이어티(Edwards v. National Audubon Society, Inc.) 사건은 20 개 이상의 주 및 연방법정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다.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보도의 효과가 무엇인가? 어떤 권위 있는 법칙과 법적 이론이 객관적 보도를 불확실한 장래에 놓여있게 하는가? 이 질문들은 공적 명예훼손에 관한 법을 헌법화 시켜서 확대하려는 사법적 노력에 초점을 제공할 것이다.

I. 찬성과 반대 견해들

객관적 보도특권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근거된다고 선언한 에드워드 사건을 다룬 제 2 순회법정의 견해는 객관적 보도를 명예훼손의 피고로 간주해서 고통을 주어진 원칙(doctrin)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제 3 순회법정은 몇 개월 후에 디키 대 CBS 사(Dickey v. CBS, Inc.) 사건에서 이러한 특권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에드워드 사건을 판결한 카우프만 판사는 다음과 같이 논술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이다. 책임있고 현저한 조직이 공적 인사에 대해 심한 비난을 할 때 그 비난을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기자의 사적 견해에 상관치 않고 수정헌법 제 1 조는 이러한 비난에 관한 정확하고 불편부당한 보도를 보호한다. 우리들은 언론이 수정헌법 제 1 조 하에서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를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진실에 관해 심각한 의문점을 갖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도 언론이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반신반의되는 비난(또는 혐의)에 대해 용감하게 변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우프만 판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끔 민감한 쟁점을 일으키는 논쟁에 관해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공익은, 언론이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 이러한 정보를 보도할 자유가 주어질 것을 요구한다. 』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자적인 정확성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들이 건전하고 비위협적인 언론자유를 축복을 누려야 한다면, 우리들은 언론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면책을 제공해야 한다. 즉 저널리스트가 합리적이고 선의로 혐의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믿을 경우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성된 혐의를 지지하거나 협력한 또는 공적 인사에 대해 그 자신의 개인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기사를 왜곡하는 발행인은 객관적보도특권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쨌든, 제 2 순회법정에서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이 있는 지 16 개월 후에, 객관적 보도원칙은 실리만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디키 사건을 다룬 제 3 순회 법정에 의해서 배척되었다. 제 3 순회 법정은 에드워드 사건에 대한 지지가 성 아만트 대 톰슨(St. Amant v. Thompson) 사건을 다룬 미연방대법원의 제정과 모순된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했다. 디키 사건에 대한 제 3 순회 법정의 견해는 역시 원고인 CBS 방송국이 에드워드 사건의 법칙을 성 아만트사건의 「중대한 불확실성(serious doubts)」의 원칙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순회법정은 역시 에드워드 사건이, 로젠브룸 사건의 뉴스가치에 관한 초점을 배척한 게르츠 사건의 논리적 이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게르츠 사건과 로젠브룸 사건은 사적 명예훼손에 관련된 원고들을 다룬 반면에, 에드워드 사건에서의 객관적 보도특권은 공적 인사에 제한되었다. 에드워드 사건에서 정식화된 객관적 보도원칙과 실리만 사건과 같은 형태의 사례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지지를 일치시키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연방대법원이 정보원측의 어떤 실수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의해 왜곡된 기사와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의한 부정확성간의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차이점을 둔 제 2 순회법정에서 내린 객관적 보도의 정의는 「현실적 악의」 기준 또는 현존하는 관습법아래서 원칙적으로 특권이 인정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보호할지도 모른다.

객관적 보도원칙의 일반적인 수락은 인색한 배려를 받은 에드워드 사건의 양상에 의해서 역시 평가절하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방법원의 반대되는 판결을 무시하는 카우프만 판사는 공적 인사인 원고들이 실리만 사건의 규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지지했다. 객관적 보도원칙에 관한 판사의 견해는 제 2 순회법정에 의해서 지지되었고, 이는 다시 제 3 순회 법정에 의해서 새로운 원칙이

제정됨으로써 배척되었다. 이때 제 3 순회 법정에 의해서 제기된 원칙에 관한 문제점들은 적어도 헌법적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서 객관적 보도의 장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II. 에드워드 사건의 충격

비록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원칙이 10 여 개국의 상고법원들과 수개의 연방법원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 4 년 동안의 에드워드 사건 판결의 지지에 관한 충격을 논한다는 것은 어렵다.

어쨌든, 인용한 이 모든 사례들에서 객관적보도 특권은 단지 몇몇 판결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법정과 연방법정들이 새로운 헌법적 명예훼손 특권을 채택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디키 사건을 다른 제 3 순회 법정의 배척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그 문제를 검토하기를 거부한 사실에 부분적으로 기인할지도 모른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뿐만 아니라 연방의, 제 2 순회 법정들은 에드워드 사건을 대단히 호의적으로 인용했다. 1980 년 10 월에,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한 카우프만 판사는 「객관적 보도가 아직 제 2 순회 법정의 법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고무되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에드워드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판결하고자 해도, 배심원들이 거기에 적합한 법적인 토론을 하지 않았다」 고 개탄했다.

또 어떤 연구가에 의해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에드워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영성한 술어가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을 남기고 있다. 예를 들면, 무엇이 「현저하고(prominent)」 그리고 「책임 있는(responsible)」 사람들, 또는 조직들(organizations)을 구성하는가? 무엇이 특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도의 「뉴스가치(newsworthy)」를 판단하는 기준인가? 보도과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 기자의 객관적 보도의 특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어쨌든, 에드워드 사건의 간결 이후의 많은 사례들은 다양한 이 문제들을 조명하고 있다.

연방법정들의 경우 : 현실적 악의 법칙을 적용한 게르츠(Certz) 사건 이후의 많은 명예훼손사건의 중요한 초점인 명예훼손에 관련된 원고의 신분이, 역시 에드워드 사건을 인용한 많은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스위크지가 프론티어 항공사의 집행부에 관한 진술에 근거한 기사를 공표했는데 그 항공사의 전 부사장이 뉴스위크 지를 상대로 제소했고, 제 10 순회 법정은 그 사건에서 객관적인 보도의 적용을 배척했다. 법정은 에드워드가 공적인사로 적용된 데 반하여 원고는 사인이므로, 「언론이 공무원과 공적 인사에 관해 보도했을 경우 언론에게 부여되는 보호들이, 언론이 개인에 관한 명예훼손적 진술을 공표했을 때 언론을 보호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노동조합 지도자인 지미 호터의 실종에 관한 기사를 공표함으로써 야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미시건 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사인이기 때문에 에드워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설리반 사건에서 확립된 언론의 특권 하에서, 현실적 악의를 정의하는 문제는,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피고가 그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명백한 이유때문에, 「무분별한 경시(reckless disregard)」의 의미에 항상

집중되고 있다. 「무분별한 경시」에 대한 최근 법정의 정의는 역시 어떤 사람의 명예훼손적 혐의를 단순히 보도한 것에 기자의 책임을 한정시키고 있다. 제 2 순회 법정의 객관적 보도원칙은 기사가 뉴스가치가 있고, 또 공적 인사와 관련된 현저하고 책임있는 사람들 또는 조직들로부터 나온 기사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뉴욕 북부지역의 지방법원은 보험업자에 관한 기사를 공표한 경제신문에 대한 약식재판을 받아들였다. 그 법정은 원고가 공적인사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조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는 사장들에 대한 고발 또는 방종한 국회의원에 대한 폭로에 제한되지 않는다. 기자들이 행정부의 업무실에서 「목구멍 깊숙이(Deep Throat)」란 테이프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회계학 교수가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하고,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사업을 경제신문에 일반적인 언어로 게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때, 공익문제는 동일하게 취급된다. 교수의 결론이 올바른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자유로운 사상의 공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해결되므로 별개의 것이다.』

「공적 인사의 평판에 관한 이익은 정보를 수각하고 자기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사상과 지식의 생동하는 맥박을 방해할 수 없다」는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뉴욕북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보도가 대공사의 재정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 자유로운 사상의 공개시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공익은 개인 신분의 존엄을 위한 원고의 주장을 능가해야 한다.」 어쨌든, 좀더 최근에 제 2 순회 법정은 객관적보도의 헌법적 특권이 시장을 상대로 한 한 여인의 강간고소에 관해 단순한 보도의 한계를 넘어서 기사화 한 뉴타임즈 지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지했다.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뉴타임즈 지의 기사는 에드워드 사건에서 설정된 어떤 조건도 거의 충족시키지 않는다. 특권에 대한 한계설정 문제가 남아있는 한편, 배심이 뉴타임즈지가 그 혐의를 단순하게 보도한 것이 아니라, 강간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고 동의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법정의 판단은 옳바르다. 실제로, 그 기사는 재치있는 구성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그 기사가 무엇인가 획책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고지식하다.』

제 3 자의 언설(statements)에 나타난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객관적 보도의 특권을 위반하는 것일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언설의 진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부인을 유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위반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기자가 사교계의 희생자들의 견해를 꼬집어 내는 것을 단순히 피해야 한다는 실리란 사건의 원칙아래서, 신문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드번(Audubon) 사교계의 혐의들을 공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카우프만 판시는 이러한 접근방법은 「조그만 조심을 간과함으로써 위험한 사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쨌든, 에드워드 사건을 다룬 법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객관적 보도의 특권아래서, 아무리 격렬하고 단순한 부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지라도, 그렇게 평범하게 일어나는 부인은 양심적인 기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과실에 대해 경고할 수 없을런지도 모른다.』

좀더 최근에 그 당시의 하원의원인 마너엘 J. 프러드 씨의 형사적 혐의사실을 보도한 타임지의 기사가 FBI에 의해서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회사에 의해서 제소당했다.

펜실베이니아 주법을 적용한 연방지방법원은, 누군가가 분명히 그 잡지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극비의 FBI 보고서에 관한 타임지의 요약이 주의 관습법 아래서 공정한 보도의 특권으로 보호된다는 판결을 내린다. 매디코 대 타임 사(Medico v. Time, Inc.) 사건에 관한 판결을 내린 제 3 순회 법정은 객관적 보도의 헌법적 원칙을 재심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 법정은 「뉴스가치가 있는 명예훼손적 정보원이 정부공무원 또는 보고서일 경우, 에드워드사건의 판결원칙이 강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디키 사건을 다룬 제 3 순회 법정은 에드워드사건의 판결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매디코 사건의 판결문은 「다른 연방법정들은 연방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로 발설된 명예훼손적 언설의 공표로 인한 언론의 책임을 지지하는 것을 꺼리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 법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심스럽게 지적했다. 『우리들은 신문사가 원래 정부 정보원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토대로 하여 공익문제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재공표한 것을, 수정헌법 제 1 조가 면책 시킨다는 점을 여기에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들은, 두 주대법원들과 다른 연방법정들이 이러한 상황아래서 언론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공정한 보도에 대한 관습법적 특권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표명한 우려를 믿는다. 디키 사건이 헌법적 특권으로서의 객관적 보도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사건의 원칙이 공정한 보도의 특권에 대한 제한된 양상을 결정하는데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지도 모른다. 』

주 법정들의 경우 : 지난 4 년 동안에, 에드워드 사건이 다섯 개의 주들과 콜롬비아 특별행정구역에서 적어도 14 건의 명예훼손 소송들에 인용되었다. 적어도 4 개 주에서 법정들은 에드워드 사건에서 지지된 객관적 보도의 특권을 채택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고, 다른 근거들에 의해서 판결된 다양한 다른 사례들이 있는 한편, 주 법정들은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원칙을 인정하면서 인용했다. 객관적 보도의 특권은 뉴욕, 일리노이, 조지아, 캘리포니아 그리고 콜롬비아 특별행정구역의 항소법원에서 채택되는 경향이 보인다. 제 2 순회 법정이 있는 뉴욕에서, 여러 법정들이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원칙을 인용했다. 뉴욕주 대법원은 오르 대 린치(Orr v. Lynch)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약식재판을 허가하면서 설리반 사건의 판결원칙의 적용을 완료하는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을 인용했다. 그리고 그 법정은 라디오 뉴스의 진행자가, 보도된 총기발사사건에 관한 면담자의 이설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피고가 진실에 대해 「무분별한 경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지했다. 그 법정은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그가 인용된 말들의 진실여부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가정하지 않고 그 뉴스사건을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의 확신이나 의심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좀더 최근의 뉴욕 사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있고 그리고 끝난 후에 뉴스 기자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근거 없는 명예훼손적 언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하면서, 1 심 판사는, 「객관적 보도특권」이 공익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되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신문사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다른 뉴욕 법정은 객관적 보도가 「기자 자신에 의해서 혐의내용이 날조되고, 유포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배척했다. 또 다른 뉴욕의 사례에서, 1 심 법정은 재판절차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공표를 객관적 보도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법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피고들은 그들의 학문적인 신념에서 사법절차를 보도할 특권과 뉴스가치가 있는 언설을 보도할 특권은 각각 그것 자체의 발단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다. 전자는 공공기록과 절차란 진실된 공적 특성을 보증하는 한편, 후자는 공중이 뉴스가치가 있는 논쟁점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을 보증한다.』

그 법정은 공표된 기사의 명예훼손적 언어가 사법절차의 기록이란 이유로 인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객관적 보도」라는 피고의 주장이 거부되었다.

일리노이주의 항소법원인 제 4 지방 법원은 크라우스 대 챔페인 뉴스 가제트사(Krauss v. Champaign News Gazette, Inc.) 사건에서 객관적 보도의 특권을 채택했다 그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사건은 원고에 의해서 계획되고 감독된 「TARGET」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기사로 인해서 일어났다. 한편, 기사가 일리노이주의 관습법 아래서 무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항소법원은 무엇보다도 그 기사가 「분명하게 객관적 보도특권의 범주내에 있다」는 1심 법정의 판결을 확정했다. 또 다른 명예훼손 소송사건은 결백한 문장구성이기 때문에 기각되었고 일리노이 제 1 지방 항소법원의 한 판사는 에드워드 사건에 의해서 정식화되고 크라우스 사건을 담당한 제 4 지방법원에 의해서 채택된 것과 같은 객관적 보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최근의 주 대법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만약 공익문제가 내포된 사인에 관한 언급이 현실적 악의가 구성되는 요구조건의 더 제한적인 보호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에드워드 사건의 객관적 보도원칙의 광범위한 보호가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이후의 제 1 지방법원의 명예훼손사건에서, 일리노이 항소법원은 뉴스가치가 있는 객관적 보도를 보호하는 헌법적 대권에 부분적으로 근거를 두고있는 신문사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측인 신문사에 대해 허락된 약식재판을 반복했다. 에드워드 사건과 크라우스 사건에 의해서 발전된 해석이 게르츠 사건을 다룬 미연방대법원과 트로먼 대 우즈(Troman v. Woods) 사건을 다룬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의해서 명백하게 거부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일리노이 법정은 크라우스 사건을 다룬 일리노이 항소법원인 제 4 지방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헌법적 특권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피고측의 도전을 배척했다. 비록 객관적 보도가 에드워드 사건에서처럼 공적인사에 관해 행해진 명예훼손적 언설의 공표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제 1 법정은 이 사건의 원고가 추인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객관적 보도라는 주장을 무시했다.

연방대법원처럼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객관적 보도의 문제에 대해서 딱 잘라서 정면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7 명의 시의원들이 시사무원, 신문기자 그리고 발행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애드워드 사건의 판결을 인용했다. 원고들은 시의회에서 시사무원들에 의해서 행해진 근거 없는 명예훼손적 언설과 몇 개월 후 기사에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인용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형사적 범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부인이 필연적으로 기자가 그 혐의의 진실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 예로서 에드워드 사건이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법정은 「약간의 상황아래서, 비록 그 신문이 언설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신문은 공무원 또는 공적 인사에 관해서 행해진 명예훼손적 언설을 보도한 책임이 면책된다」는 에드워드 사건을 다룬 법정에 의해서 취해진 입장을 배척했다. 에드워드 사건을 인용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인 제 1 지방법원은 전시변호사가 몬트레이 페닌슐라 헤럴드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그 신문은 시변호사로서의 그의 면직과 빈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둘러싼 공적 논쟁에 원고가 내포된 기사와 논설을 공표했다. 맥 크라켄 대 게인스빌 트리뷴(Mc Craken v. Gainesville Tribune, Inc.) 사건을 다룬 조지아 항소법원은 원고가 「파렴치한 토지 강탈자」라고 근거없이 허위로 언급한 제 3자의 언설에 근거된 기사를 공표한 신문에 대한 약식재판을 확정하는데 객관적 보도특권을 채택했다. 애드워드 사건을 인용하면서 언설이 「Broad of County Commissioner of Roads and Revenues」의 면전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만약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된다면 그 기사는 특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조지아 법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적인 절차, 공적인 토론, 공무원 그리고 공적인사에 관해 정보전달이 필요한 공익문제는 화자에 의해서 발설된 내용에 관한 책임을 의식하지 않고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도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

에드워드 사건을 재인용하면서,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란 정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법정은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객관적 보도이다」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지방법원인 항소법정은 네이더 씨가 포함된 코르데르(Corvair.) 토론에 관한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한 신디케이터드 칼럼니스트(syndicated columnist)를 상대로 해서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제소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원칙을 적용했다. 그 칼럼니스트는 사실적 정보를 위해서 국회보고서 중의 상원소위원회 보고서에 의존해서, 그는 네이더 씨가 코르메르에 반하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소위원회는 네이더 씨의 혐의가 그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기사는 역시 네이더 씨가 「혐의를 한정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증거는 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유용하다」고 언급했다. 원고를 지지하면서, 그 법정은 「공적 인사에 대해 사적 공격을 가한 다른 사람의 언설을 고의로 계속한 공표자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특권에 의존할 수 없다」는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 사건에서, 법정은 공표자가 그 모호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했다.

III. 결 론

공중이 공익문제와 관련된 공적 보고서,비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언설을 알 권리가 있다는 논쟁에 관한 좋은 판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7 년에 에드워드 사건에 대한 판결원칙이 선언된 이래로, 객관적 보도특권의 요체인 언설의 온건성과 정확성에 대한 기자의 견해에 개의치 않고, 공정한 보도에 대한 헌법적 특권의 인정이 발전속도 측면에서 느리고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다.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이 있는 후 공정한 보도특권에 관한

논쟁이 수개월이내에 연방법정들에서 「순회 법정간의 논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진실일지도 모른다. 이유야 무엇이든간에, 단지 4~5 개 주들에 있는 항소법정들은 객관적 보도를 그들의 재판권을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 명쾌하게 채택했고, 그리고 가끔 단지 제한된 전후 문맥에서 적용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연방대법원이 객관적 보도에 관한 문제점을 심사하도록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4 년 동안에 사법적인 인정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것이 현실적 악의 법칙의 확대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에드워드 사건의 판결은 실리만 사건의 판결기준에 대한 강한 논쟁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이 주장될 수 있다. 객관적 보도가 옹호하는 것은 공적 인사에 대한 나쁜 언설이란 점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보도할 특권이고, 후자는 실리만 사건의 판결기준 아래서 현실적 악의를 구성할 지도 모르는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객관적 보도원칙은 현저하고 책임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직들의 뉴스가치가 있는 모든 진술들 뿐만 아니라 공적 보고서와 행정기관의 절차들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보도에 대한 관습법적 특권을 확장할지도 모르고, 후자는 전통적인 공정한 보도특권의 한계이다. 에드워드 사건에 대한 제 2 순회 법정의 판결원리는 아직까지 공정한 보도특권에 근거된 수정헌법 제 1 조의 확장자들을 위해서 가장 설득적인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 법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그들 자신들을 통제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논쟁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 기본이다.』

제 2 순회 법정의 카우프만 부장 판사에 의하면,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자유는 행사는 가중 공적 인사의 평판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불행스럽다는 것이다. 그 법정은 에드워드 사건에서 「이것이 민주적인 생활방식의 축복을 위해서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